

대법원 2001. 5.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[보증채무금] [공2001.7.1.(133),1375]

판시사항

- [1] 기◆◆◆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상 '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'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취지
- [2] 금융기관의 특약사항 불이행에 기◆◆◆보증기금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, 이러한 사정을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판결요지

- [1] 기◆◆◆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타 재정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'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'이라는 특약사항과 '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'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에,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◆◆◆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와 유사하게,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

기◆◆◇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기◆◆◇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,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기◆◆◇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[2]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이상 면책약관조항에 따라

기◆◆◇보증기금의 책임은 면책되는 것이고,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기◆◆◇보증기금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기◆◆◇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다.

참 조 조 문

[1] 민법 제105조, 제428조,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, 제12조, 제30조

[2] 민법 제428조, 제750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1. 5.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00. 5. 25 선고 99나3557 판결

청주지방법원 1999. 7. 23 선고 98가단21410 판결

참 조 판 례

[1]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18734 판결(1984,520),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46030 판결(1988,189),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다37821 판결(1992,1037),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다49609 판결(공1988, 168)

따 릇 판 례

대법원 2008. 10.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, 대법원 2007. 7.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, 대법원 2001. 8. 21 선고 99다53964 판결

전 문

【원고,상고인】 농▲▲▲조합중앙회

(소송대리인 변호사 김@길)

【피고,피상고인】 기◆◆◆보증기금

(소송대리인 변호사 박▼규)

【원심판결】 청주지법 2000. 5. 25. 선고 99나3557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1. 원심 판단의 요지

원심은 먼저 기초사실로서, 피고가 1997. 12. 17. 류♡열과 사이에 보증원금 82,500,000원, 보증기한 2005. 12. 16.로 각 정하여, 류♡열이 같은 해 10월 10일 충청북도가 조성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지원업체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기타 재정시설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대여원리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류♡열에게 그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서를 교부한 사실, 피고는 1997. 12. 5. 류♡열과의 신용보증 약정에 관한 상담시 위 류♡열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수인의 소유로서 그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나 위 이수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을 제출하면서 임의경매신청인과 협의하여 이를 취하시키고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여 위 류♡열이 제출하는 1997. 11. 28.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후 원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신용보증서 특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,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특약사항으로 류♡열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을 기재하였고, 위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, 1998. 1. 5. 원고는 위 류♡열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위 류♡열에게 금 82,500,000원을 이자 연 6.5%, 변제기 3년 거치 4년간 매 3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위 류♡열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즉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, 그런데 류♡열은 이미 1997. 11. 28. 청주지방법원 97타경131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무렵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

주지 아니하고 있다가, 1998. 1. 16. 남궁●에게 채권최고액 금 120,000,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, 위 류♡열이 위 대여 당시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, 피고는 일응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.

그러나 원심은 이어, 원고가 위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특약사항과 약관규정의 취지는 원고가 특약사항에 기재된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 책임을 면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, 후에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원고를 대위하여 위 류♡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원고에게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,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,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, 류♡열이 위 대여 당시 이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, 원고가 이후 위 남궁●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여 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과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위 류♡열의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유권 취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더러, 위 대출 이후에도 10일 이상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남궁●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, 원고로서는 위 대여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도,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남궁● 명의로 마쳐지게 하여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, 이로써 피고가 피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될 피고의 대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(그리고 피고가 위

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이미 위 류♡열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류♡열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, 위 특약사항이 기재된 신용보증서 발급경위와 그 후의 원고의 귀책 정도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면책 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여,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).

2. 대법원의 판단

기◆◆◇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타 재정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'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'이라는 특약사항과, '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'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에,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◆◆◇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와 유사하게,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◆◆◇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기◆◆◇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,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기◆◆◇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(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본보증우선해지특약 및 위반시 면책에 관한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다37821 판결 등 참조).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, 금융기관인 원고가 위 대여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그 판시 담보취득 특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, 원고의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

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있다고 하여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. 그리고 이러한 피고의 보증책임 면책은, 원고가 대출 당시 류♡열이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대출 이후에도 담보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약관조항에 따라 면책이 된 것으로서, 설령 피고도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류♡열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신용보증서에 적절하지 아니한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, 원고의 위와 같은 특약사항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 약관조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는 것이고,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피고측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의 보증채무 면책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(다만 피고의 이러한 잘못에 고의, 과실이 인정되고 그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나,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),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윤재식(재판장)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(주심)